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8(목) 10:00

제223회 금천구의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도시안전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95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5. 29.
- 라. 회부일자 : 2020. 5. 29.

## 2. 제안이유

연령이나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과 각종 생활환경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구민이 보편적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안 제1조)
-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와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 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안 제8조)
- 마.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0. 4. 20. ~ 2020. 5. 11.(20일 이상)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3)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 4)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 5)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 5. 검토의견

### 가. 제정 경위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과 각종 생활환경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정의와 기본 이념을 규정하였으며 “보편적인 디자인”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이라고도 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한 미국의 건축가이자 교육자인 로널드 메이스의 제창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한 미국의 건축가이자 교육자인

로널드 메이스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주창한 바 있음.

- ①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② 사용상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③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and intuitive) ④ 정보 이용의 용이(perceptive information) ⑤ 오류에 대한 포용력(tolerance for error) ⑥ 적은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⑦ 접근과 사용을위한 충분한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 안 제6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수립을 규정하는 것은 현장 시설의 일괄 적용의 어려움과 설치 기준 변경 시의 조례 개정 등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시행규칙 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의한 금천구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근거법령은 없으나 주민들 생활의 편리성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지자체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등 각 법령이 규정하는 디자인과 비교하여 상호 조정과 보완을 통해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물까지 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자치법규의 제명은 함축적으로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는 것이 일반 원칙임<sup>1)</sup>.  
따라서 조례 제명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유한 표현의 알기 쉬운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한글 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 관련 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디자인법 )

[시행 2019. 1. 25] [법률 제16047호, 2018. 12. 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9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